

# 이 사 회 회 의 록

- 회의일시 : 2018년 09월 11일 (화) 오후 7시 00분
- 소집통보 : 2018년 09월 03일 (월)
- 회의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0(탄방동), 비씨씨 킹덤뷔페
- 참석자 : 총 재적이사 11명 중 7명 참석  
김\*미, 장\*정, 최\*석, 김\*중, 오\*수, 심\*균, 임\*운
- 불참자 : 고\*봉, 고\*신, 이\*식, 장\*정
- 의 제 : 1. 사회복지법인 포도원 및 산하시설 2018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심의
- 의결사항 : 1. 사회복지법인 포도원 및 산하시설 2018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결의

## ○ 회의진행 :

\* 2018년 09월 11일(화요일) 오후7시 00분에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0(탄방동) 비씨씨 킹덤뷔페 모임장에서 이사회를 개최, 법인사무국장 종사자 김\*정을 이사회 서기로 임명하다. 김\*중 이사가 11인의 이사 중 7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의장 김\*미 대표이사가 정관 제28조에 의거 개회를 선언하다.

의 장 : 바쁘신 가운데서도 사회복지법인 포도원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이사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은 사회복지법인 포도원 및 산하시설 2018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심의입니다. 나누어 드린 예산서를 보면서 법인 및 산하시설 실무자분들의 부연 설명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인의 2018년 2차 추정 예산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 정 : 법인의 2018년도 2차 추경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있는 대전시 유성구 문화원로 \*\*\*, \*\*\*(호(\*\*\*, \*\*프라자)에 대한 임대사업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주변시세를 반영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하향 조정하여 기타차입금과 임대료수입이 감소된 것을 제외하고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임대료수입 1천만원, 지정후원금 3천7백4십4만원, 비지정후원금 2천8백3십6만3천원, 기타차입금 3천만원, 전년도이월금 7백5십1만1천2백4십7원, 전년도이월금(후원금) 2천3백1십2만1천8백7십5원, 기타예금이자수입 2만8천8백7십8원, 기타잡수입 4천8백2만3천원으로 총 1억8천4백4십8만8천원입니다. 세출은 급여 3천8백5십1만3천5백원, 제수당 3백8십4만6십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 3백5십2만9천5백1십원, 사회보험부담금 4백9만8백원, 기관운영비 1백만원, 회의비 1백6십만원, 여비 6십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천3백6십만4천4백원, 공공요금 7백9십8만원, 체세공과금 5백만원, 기타운영비 1백만원, 시설비 3백만원, 자산취득비 2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백만원, 시설전출금(후원금)-로댐나무 1백만원, 시설전출금(후원금)-포도나무 1백만원, 시설전출금(후원금)-로댐 1천만원, 원금상환금 7천1백6십8만7천4백원, 잡지출 2백4만2천3백3십원, 예비비 1천만원으로 총 1억8천4백4십8만8천원입니다. 2018년 2차 추경예산 세출에서 주목할 점은 인건비 지급을 2017년도에서 2018년도 기준으로 변경하여 인건비 항목이 증가한 것과 임대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관련 세출 항목을 삭감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 \* 수 : 법인의 2018년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예산이 각 항목별로 잘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함에 동의합니다.

김 \* 중 : 오\*수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 장 :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일 동 : 참석이사 전원 “없습니다.” 라고 답하다.

의 장 : 이로써 제출된 법인의 2018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로템나무주간보호센터 2018년 2차 추경예산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박 \* 숙 : 로템나무주간보호센터 2018년 2차 추경예산 세입은 이용료사업수입 2천6백4십만원, 시도보조금-운영비 7백7십만원, 시도보조금-인건비 1억5천2백2십9만4천원, 기타보조금-시비 2백4십만원, 기타보조금-구비 2백4십만원, 비지정후원금 9백만원, 법인전입금(후원금) 1백만원, 전년도이월금(이용료) 2천4백8십4만1백9십3원, 전년도이월금(잡수입) 0원, 전년도이월금(후원금) 6백5십4만3천1백2십5원, 기타예금이자수입 2만7천6백8십2원, 기타잡수입 1백9십2만원으로 총 2억3천4백5십2만5천원입니다. 세입에서 주목할 점은 시추경에 따라 단가변동으로 인해 운영비 보조금이 감소된 것과 인건비 기준변경으로 인해 인건비 보조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은 급여 1억1천6백6십9만3천7백원, 제수당 2천9백9십1만1천5백8십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천2백2십3만9백원, 사회보험부담금 1천3백7십1만5천4백3십원, 기타후생경비 5십6만원, 기관운영비 5십만원, 회의비 8십6만원, 여비 1백만원, 수송비 및 수수료 4백8십5만7천원, 공공요금 3백만원, 체세공과금 1백2십8만4백8십원, 차량비 1백2십5만원, 기타운영비 1백9십만원, 시설비 0원, 자산취득비 6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백5십만원, 연료비 2백4십만원, 사회심리재활사업비 1천9십만3백원, 교육재활사업비 9백5십8만5천6백1십원, 기타사업비 2백8십2만원, 식간식사업비 1천5십6만원으로 총 2억3천4백5십2만5천원입니다. 세출에서 주목할 점은 인건비 지급을 2017년도에서 2018년도 기준안으로 변경하여 인건비 항목이 증가한 것과 내용연수가 지나서 계획했던 도배·장판 교체 비용이 절감되어 시설장비유지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요.

최 \* 석 : 로템나무주간보호센터의 2018년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예산이 각 항목별로 잘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함에 동의합니다.

심 \* 균 : 최\*석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 장 :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일 동 : 참석이사 전원 “없습니다.” 라고 답하다.

의 장 : 이로써 제출된 로댐나무주간보호센터의 2018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포도나무주간보호센터 2018년 2차 추경 예산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박 \* 숙 : 포도나무주간보호센터의 2018년 2차 추경 예산 세입은 이용료사업수입 1천3백5십만원, 시도보조금(운영비) 7백5십만원, 시도보조금(인건비) 1억5천1백4십3만7천원, 기타보조금(종사자수당-시비) 2백4십만원, 기타보조금(종사자수당-구비) 2백4십만원, 지정후원금 1백2십만원, 비지정후원금 1백6십만원, 법인전입금(후원금) 1백만원, 전년도이월금(이용료) 2천2십9만8천2백7십6원, 전년도이월금(잡수입) 1십6만2천1백7십원, 전년도이월금(후원금) 5백1십9만7천9백8십7원, 기타예금이자수입 1만4천5백6십7원, 기타잡수입 1백9십2만원으로 총 2억8백6십3만원입니다. 세입에서는 시추경에 따라 단가변동으로 인해 운영비 보조금이 감소된 것과 직원 변동으로 인해 호봉 차이가 발생하여 인건비 보조금이 감소된 것을 제외하고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세출은 급여 1억5백8십7만6천원, 제수당 2천5백4십7만7천4십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천2백2십3만8천5백2십원, 사회보험부담금 1천1백4십만2백8십원, 기타후생경비 4십6만원, 기관운영비 3십만원, 직책보조비 1백2십만원, 회의비 6십2만5천원, 여비 1백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백4십5만1천4백7십3원, 공공요금 3백8십1만8천3백8십원, 제세공과금 7십9만원, 기타운영비 1백7십9만2천원, 시설비 0원, 자산취득비 1백2십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백7십5만8천원, 연료비 2백5십5만원, 사회심리재활사업비 1천2백4십6만4천9백2십원, 교육재활사업비 9백6만9천5백2십7원, 기타사업비 1백1십6만원, 식간식사업비 1천4십6만1천원, 예비비 1백5십3만7천8백6십원으로 총 2억8백6십3만원입니다. 세출에서 주목할 점은 인건비 지출을 2017년도에서 2018년도 기준으로 변경하여 개인별 인건비는 증가하였으나 신규직원의 호봉이 퇴직직원의 호봉보다 훨씬 낮아서 인건비 항목이 감소한 것과 내용연수가 지나서 계획했던 도배·장판 교체 비용이 절감되어 시설장비유지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임 \* 윤 : 포도나무주간보호센터의 2018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예산이 각 항목별로 잘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함에 동의합니다.

장 \* 정 : 임\*윤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 장 :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일 동 : 참석이사 전원 “없습니다.” 라고 답하다.

의 장 : 이로써 제출된 포도나무주간보호센터의 2018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로템 2018년 2차 추경 예산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맹 \* 정 : 로템 2018년 2차 추경 예산 세입은 입소비용수입 8천1백6십만원, 국고보조금 8억7천9백9십6만6천2백4십원, 시도보조금 3억9천6백6십4만4천3백1십원, 시군구보조금 2천8백6십4만6천2백5십원, 지정후원금 2천8백3십7만원, 비지정후원금 2천1백6십2만6백3십6원, 법인전입금(후원금) 1천만원, 전년도이월금 1억5천8백3십1만6천7백6십1원, 전년도이월금(후원금) 2천6백5십3만9천3백6십4원, 이월사업비 3천8백4십1만1천원, 기타예금이자수입 1십4만8천1백9십9원, 기타잡수입 1천5백만6천2백4십원으로 총 1십6억8천5백2십6만9천원입니다. 세입에서는 직원 변동으로 인해 호봉 차이가 발생하여 인건비 보조금이 감소된 것을 제외하고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세출은 급여 7억4천7백9십7만8천2백7십원, 제수당 2억9천2백5십6만8천9백7십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8천9백6십7만6천8백9십원, 사회보험부담금 9천1백2십2만2천6백1십원, 기타후생경비 5백1십3만1천8백7십원, 기관운영비 5십만원, 회의비 1백8십3만5천원, 여비 6백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천8백4십8만9천2백3십원, 공공요금 2천3백1십7만2천8백원, 제세공과금 5백1십2만3천6백7십원, 차량비 6백5십만원, 기타운영비 2천1백1십만4천원, 자산취득비 5백4십만8천1백원, 시설장비유지비 8백3만6천원, 생계비 3천9백7십3만8천원, 수용기관경비 1천2백4십만원, 피복비 8백9십6만2천5백원, 의료비 1천2백1만원, 장의비 3백만원, 특

별급식비 1천만원, 자활사업비 9백5십2만9천3백9십원, 연료비 1천1백1십5만원, 수학여행비 2십만원, 기타교육비 3십만원, 의료재활사업비 3천4백만원, 사회심리재활사업비 3천2백9십3만3천6백5십원, 교육재활사업비 8백3십3만5천원, 기타사업비 3천5백7만원, 과년도지출 3천8백4십1만1천원, 잡지출 1억2십3만8천8백5십원, 반환금 6백2십4만3천2백원으로 총 1십6억8천5백2십6만9천원입니다. 세출에서 주목할 점은 수급생제급여로만 입소비 사용이 제한된 것이 완화됨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으며, 이용인들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하여 산소공급기, 산소포화도기, 산소발생기, 모니터기, 썩션기 등의 의료장비 구입이 필요해 의료재활사업비가 증가한 것과 이용인들의 건강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심리재활사업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요.

장 \* 정 : 로템의 2018년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예산이 각 항목별로 잘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함에 동의합니다.

오 \* 수 : 장\*정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 장 :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일 동 : 참석이사 전원 “없습니다.” 라고 답하다.

의 장 : 이로써 제출된 로템의 2018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안내해 드린 안전에 대해서는 의결을 마쳤습니다. 이사회를 마치기 전에 로템의 원장님께서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여러 이사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미리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잠시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 \* 영 : 다름이 아니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로템의 이용제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로템은 중증장애인 29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의 이용자들이 사춘기를 겪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연하장애와 호흡 곤란 등이 수반되어 PEG

와 캐놀라 시술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뎀으로 복귀하다보니 응급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3명의 이용인이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특성상 평소 인력의 부족함이 항상 제기되었고, 응급상황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이용인들은 양과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받게 되고, 교사들은 야간근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교사는 소진되어 퇴사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해야하는 관리자적 측면에서 교사 및 운영위원회 위원들과의 수차례의 논의 끝에 이용제한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그 기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하루에 산소포화도가 50이하로 3~4회이상 떨어지는 경우와 산소를 공급해도 포화도가 80이상 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둘, 캐놀라 수술을 한 경우 한 달간 요양병원 혹은 가정케어 후 귀원해야 한다.

셋, 이용인들 중에서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이용인의 경우 한 달의 시간을 가지고 케어해본 후 지속적인 케어가 어려울 경우 요양병원으로 이동하거나 가정과 연계하여 논의한다.

넷,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음성전화, 응급벨, 응급상황 대기근무자 지정 등)한다.

다섯, 위의 경우를 안내하고 상담한 후에도 보호자가 병원이 아닌 로뎀에서 지내기를 희망한다면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을 논의한다.

여섯, 이와 관련하여 입소비용 또한 4만원을 기본금으로 하고 이용한 날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수술 및 건강상태 악화로 인하여 요양병원 연계 시에는 입소비용을 납부하지 않기로 한다.

이러한 내용의 이용 제한을 두어도 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십 \* 권 : 병원에서는 산소포화도가 90정도이어도 응급상황입니다. 의료진 없이 응급상황에서 PEG와 캐놀라 등을 한 이용인을 로뎀의 교사들이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이용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알겠지만, 진정으로 그 이용인을 위하는 것은 전문인에게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부 기준을 더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 \* 정 : 로템은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거주시설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거주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유불급이라 하였습니다. 일부에게 우리의 역할 이상의 의료서비스가 집중되다보면 거주시설의 기능에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며, 응급상황 당사자는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인에게 못 받게 되는 결과를, 같이 생활하는 이용인들은 기존에 비해 떨어지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결과를, 교사들은 소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저는 로템이 거주시설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임 \* 윤 : 맞습니다. 로템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응급상황의 이용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연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심\*균 이사님이 잠시 언급하셨듯이 제시한 내부기준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회의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교사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이용관련 기준을 재정비하여 추후 이사회 의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 동 : 참석이사 전원 “동의합니다.” 라고 답하다.

의 장 : 다른 의결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십니까?(전원 “없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2018년 09월 11일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09시 00분이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2018년 09월 11일

대표이사 김 \* 미 (인)

이 사 장 \* 정 (인)

이 사 최 \* 석 (인)

이 사 김 \* 중 (인)

이 사 오 \* 수 (인)

이 사 심 \* 관 (인)

이 사 임 \* 윤 (인)